

제286회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

2019. 4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 경 부위원장님,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, 지금부터 『서울 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2019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특수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,
-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학교 3개교의 위치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-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와
- “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”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해온 서진학교와 나래학교를 9월 1일자로 신설하여 서울 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,
-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학교 3개교의 위치 오류를 정정하고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